

부산직할시사하구고속철도건설사업지원을위한구세과세 면제에관한조례안

제 1 조(목적) 이 조례는 고속철도 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세의 과세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(과세면제) ①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법의 규정에 의한 고속철도 건설 사업자인 한국고속철도공단이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과세기준일 현재 고속철도건설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고속철도 본선, 정차장, 차량기지 및 정비창, 궤도부설 전진기지, 송전선시설 등 고속철도건설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.

②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이 고유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재산 및 동 공단에 종사하는 종업원의 급여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한다.

제 3 조(면제신청) ①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구청장은 지체없이 이를 조사 결정하고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구청장이 면제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과세면제할 수 있다.

제 4 조(시행규칙)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① 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② (적용례)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이 고속철도 건설을 위하여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이미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이 조례 시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이 조례를 적용한다.

③ (적용시한) 이 조례는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998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.